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

1995. 11. 7 제정

2014. 1. 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종합적인 교원실적평가(이하 “교원종합평가”라 한다)를 위한 평가영역, 평가 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제 2 조 (평가시기) ①교원종합평가 시기는 「교원인사 규정」 제12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속하는 학기말인 1월 또는 7월로 한다. (개정 2014.1.29.)

②승진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항이 정하는 시기로부터 매 1년 후에 평가한다.

③교원종합평가에 관한 보고서는 1월 평가 대상자는 매년 11월말 이전에, 7월 평가 대상자는 5월말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평가영역 및 교원의 계열구분) ①교원종합평가는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본교 「교원인사 규정」 및 이 세칙에서 말하는 교원의 계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9.)

1. 인문사회계열: 국제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신학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제외), 경영대학, 건강과학대학(체육과학부, 보건관리학과), 스크랜튼대학, 교양영어실, 한국문화연구원, 이화인문과학원, 교양교육원 (개정 2013.7.4.)

2. 자연계열: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건강과학대학(간호학부, 식품영양학과), 약학대학 (개정 2013.7.4.)

3. 예능계열: 디자인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음악대학, 조형예술대학, 교목실 (개정 2010.3.16)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내용의 특성상 다른 계열의 평가방식을 적용받기 원하는 교원은 신규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계열구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라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계열구분의 특례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교원종합평가점수의 산정) ①교원종합평가점수는 각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

다.

②각 영역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숫점 아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2 장 연구실적평가

제 5 조 (평가대상연구실적) ①평가대상인 연구실적은 1월 평가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 평가 대상자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발표된 것으로 하며, 교원의 소속이 본교로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7.4.)

②발표시기는 발간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당시에 최종실적물이 미비된 것은 발간기관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 실적물을 평가대상기간 최종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평가점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하여 누락된 연구실적은 당해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하여 바로 다음의 평가에서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중복평가 금지) 동일한 내용의 논문과 기타 연구 출판물은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연구실적평가의 대상) 연구실적의 평가는 논문·저서·기타 이 세척이 정하는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되, 음악·조형예술·무용 부문 교원 및 학문분야의 특성상 특별히 인정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이 세척이 정하는 각종발표 등도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제 8 조 (공동연구실적의 평가) ①공동연구실적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그 기여율에 따라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연구자로 구분하고,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②공동연구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기여율에 따라 실적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3.7.4.)

1. 인문사회계열 및 예능계열

가. 연구책임자: $(1 \div \text{총 연구자 수}) + 0.2$ (개정 2010.3.16)

나. 공동연구책임자: $(1 \div \text{총 연구자 수}) + (0.2 \div \text{교신저자 수})$ (신설 2010.3.16)

다. 공동연구자: $1 \div \text{총 연구자 수}$ (개정 2010.3.16)

2. 자연계열

가. 연구책임자: $2 \div (\text{총 연구자 수} + 1)$

나. 공동연구책임자: $(1 + 1 \div \text{교신저자 수}) \div (\text{총 연구자 수} + 1)$

다. 공동연구자: $1 \div (\text{총 연구자 수} + 1)$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급 논문으로서 총 연구자 수가 10인 이상인 실적

에 대해서는 기여율 산정시 총 연구자 수를 10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연간 10편까지만 인정한다. (개정 2013.7.4.)

④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서 및 학술대회발표의 경우에는 연구실적점수를 총 연구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학술대회발표의 경우 총 연구자 수가 5인 이상인 실적에 대해서는 기여율 산정시 총 연구자 수를 5인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3.7.4.)

⑤공동연구실적의 총 연구자의 수에서 학생(이하 “보조연구원”이라 한다. 의학전문 대학원의 경우에는 레지던트를 포함한다)은 제외하되, 교원 1인의 기여율은 70%를 넘을 수 없다. 이때 보조연구원은 해당 실적의 연구자 정보에 소속 학교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며, 국내외 다른 학교의 학생도 보조연구원으로 본다.

(개정 2013.7.4.)

제 9 조 (학술지 논문의 평가) 학술지 논문의 평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9.)

제 10 조 (신규임용 교원의 학술지 논문 실적평가) 교원이 신규 임용된 지 1년 이내에 발간된 논문으로서 그 교원의 소속이 본교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현재 소속된 기관은 본교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점수의 5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저서 및 특허 등의 평가) ①저서의 평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7.4.)

②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기술이전 실적에 대한 평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7.4.)

제 12 조 (음악·조형예술·무용 부문 및 특수 연구분야의 실적 평가) ①음악, 조형 예술, 무용 부문의 작곡발표, 연주, 전시, 공연 또는 기타 창작발표의 경우에는 판 플렛 등의 결과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작품, 연주 또는 공연의 목적과 의도, 개념, 구성, 연구과정 등을 발표자 자신의 설명으로 체계화하고 당해 부문에의 공헌도와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2. 작품, 연주 또는 공연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시공간을 달리하여 발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 연작 및 시청각적으로 그 차이가 미미한 창작물인 경우 창작물 간의 차이와 그 예술적 의미를 밝힌다.
3. 조형예술 부문 중 국외전(개인전·단체전) 및 디자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연구과정 결과물(슬라이드·비디오·포트폴리오), 사회의 공헌도 등을 체계화하여 설명한다.
4. 음악 부문 중 지방 및 국외 연주의 경우 연구 결과물(비디오, CD, DVD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1)

②음악·조형예술·무용 부문의 창작 및 발표 연구실적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7.4.)

③음악·조형예술·무용 부문 교원의 실적을 평가할 때에 이론을 전담하는 교원(이

하 “이론교수”라 한다)의 공연(실기)실적, 또는 실기를 전담하는 교원(이하 “실기교수”라 한다)의 논문이나 저서 실적에 대하여는 상호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④건축설계를 전공한 교원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7.4.)

⑤통역번역대학원 소속 교원의 통역번역부문 실적에 대한 평가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3.7.4.)

제 13 조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 의무편수) 교원이 승진하기 위하여는 별표 9가 정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제 14 조 (보직 교원 등의 연구실적평가 특례) ①교내 보직 교원은 재임기간 중 취득 연구실적점수에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한다.

1.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100%
2. 교학부장(신임학부장 포함)급: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50%
3. 전공주임교수 및 학과장급: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30%
4. 기타: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20~40%

②교무위원 및 부처장급의 연구실적 의무편수는 보직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소숫점 아래는 버린다.

제 15 조 (연구실적점수의 가감) ①각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적의 내용에 따른 해당 점수에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공동연구실적에 대해 제1항이 정하는 점수를 가감하고자 할 때에는 실적의 내용에 따른 해당 점수에 점수를 가감한 후 공동연구실적의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제 3 장 교육 및 봉사실적의 평가

제 16 조 (교육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 교육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3.7.4.)

제 17 조 (봉사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 봉사실적의 평가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3.7.4.)

제 18 조 (평가대상 기간) 교육 및 봉사실적의 평가대상 기간은 평가일을 포함한 학기와 그 직전학기로 한다.

제 19 조 (연구년 및 휴직교수의 평가) ①1년 또는 반년 연구년교수는 연구년 기간 동안 책임수업을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수업경감 연구년교수는 연구년 기간 동안의 수업량으로 책임수업을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연구년 기간 중에 취득한 교육실적점수와 봉사실적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기당 25점의 교원종합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수업경감 연구년의 교원은 연구

년 개시 전에 당해 연구년 기간 동안 학기당 교원종합평가점수 25점 또는 본인이 취득하는 교육실적점수와 봉사실적점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④휴직교수의 경우는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1항의 제2호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구년 교수에 준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4.1.29.)

제 20 조 (기타 세부사항)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1995. 11. 7 제정)

-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미술 및 무용발표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③(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누적된 연구점수는 이 세칙에 의한 점수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 ④(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 이전의 교육 및 봉사실적점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에 대한 1년에 1.00점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경과규정) 1995년 2월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이 세칙 시행 후의 최초 직위 또는 직급 승진시에 한하여 교원의 연구실적점수와 교육 및 봉사실적점수를 상호 대치할 수 있다.

부 칙(1998. 8. 5 전문개정)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말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8. 4 개정)

이 세칙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20 개정)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14 개정)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 개정)

-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학년도 제1학기 및 2003학년도 제2학기 승

진 및 재임용 해당 교원에 대하여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 2. 6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의2 제4항에 의한 교육·봉사점수의 연구실적점수로의 전환은 2003년 3월 1일 이후에 평가되는 교육·봉사점수에 한한다.

부 칙(2003. 6. 24 개정)

이 세칙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21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25 전문개정)

제 1 조 (시행일) ①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8년 7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해서는 구 세칙을 적용한다.

②제13조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08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규칙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학술지등급·계열구분 등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①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이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취득한 실적점수는 이 세칙에 의한 교원종합평가점수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이때 교원종합평가점수는 종전에 취득한 교육·봉사실적점수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연구실적점수에 대해서만 대학(원) 연평균 연구실적승진소요점수를 충족하는 경우를 150점 만점으로 하여 동일한 비율로 환산하며, 교원종합평가점수 50점을 가산한다.

②2009년 1월 및 7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종합평가점수 30점을, 2010년 1월과 7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종합평가점수 15점을 가산한다. 다만, 2008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점수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이 승진하기 위하여는 2009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이 정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와 제13조 관련 별표 9가 정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를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이때 각각의 당해 직위·직급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구실적 의무편수를 산정하되 소숫점 아래는 버린다.

④이 세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2008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 교원은 제외한다)이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계열구분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09. 4. 21 개정)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대상)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 5]는 2009년 7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부터,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1]은 2010년 1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2. 16 개정)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 16 개정)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1]의 경우는 2011년 1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2. 15 개정)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4. 개정)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별표 1, 제11조제1항 별표 2, 제12조제2항 별표 4, 별표 5, 별표 6 및 제4항 별표 7, 제5항 별표 8, 제13조 별표 9, 제16조 별표 10, 제17조 별표 11은 2014년 1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1. 29 개정)

이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술지 논문의 평가기준 (제9조 관련)

1. 학술지 논문의 등급 구분

(개정 2014.1.29.)

구분		인문사회계열 , 예능계열	자연계열	비고	
국제 논문	국제 S급	400점	400점	Nature, Science, Cell 또는 국제학술지 평가자료(SCI, SSCI, SCIE)에 등재된 학술지 중에서 “분야별”로 IF 기준 상위 5%	
	국제 특A급	350점	350점	국제학술지 평가자료(SCI, SSCI, SCIE)에 등재된 학술지 중에서 “분야별”로 IF 기준 상위 15%	
	국제 A급	300점	300점	국제학술지 평가자료 (SCI, SSCI, SCIE, A&HCI)에 등재된 학술지 중에서 “분야별”로 IF 기준 상위 25%(A&HCI는 SJR의 Q1)	
	국제 B급	250점	200점	국제학술지 평가자료 (SCI, SSCI, SCIE, A&HCI)에 등재된 학술지 중에서 “분야별”로 IF 기준 상위 50%(A&HCI는 SJR의 Q2)	
	국제 C급	200점	150점	국제학술지 평가자료 (SCI, SSCI, SCIE, A&HCI)에 등재된 학술지 중에서 “분야별”로 IF 기준 상위 75%(A&HCI는 SJR의 Q3)	
	국제 D급	150점	120점	국제학술지 평가자료(SCI, SSCI, SCIE, A&HCI)에 등재된 학술지	
	SCOPUS	120점	100점	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기타 국제	60점	60점	기타 국제학술지(심사과정필수), 기념논문 집·공동집필단행본 논문집에 게재된 국제논문	
국내 논문	국내 A급	100점	8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국내 B급	70점	5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기타 논문	30점	20점	기타 국내 학술지, 기념논문 집, 공동집필단행본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	국제 학술 대회 발표	A	40점	40점	SCOPUS 등재 학술대회 Proceedings에 수록된 논문
		B	20점	20점	발표자 구성이 5개국(한국 포함)이상인 국제 학술대회에서 강연 및 발표된 논문(Proceedings포함)을 말한다. 다만, 프로그램에 등재되었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국내학술대회 발표	10점	10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내 학술대회에서 강연 및 발표된 논문(Proceedings포함)을 말한다. 다만, 프로그램에 등재되었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인문사회계열, 예능계열의 국제 A급 논문 중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최고의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경우에는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0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 학술지 논문 평가시 세부사항

- 가.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이하 “교내지”라 한다. 다른 대학의 교내지를 포함한다)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타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나. 위 1.의 학술지 논문의 등급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적은 원칙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전공(학과)별 학술지 목록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 다. 학술대회 발표 실적의 총 점수는 국제학술대회발표 A급을 제외하고 국제학술대회 발표가 있는 경우는 40점까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7. 4.)
- 라.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급 초청강연(30분 이상)은 국제학술대회 발표와는 무관하게 1건당 10점을 부여한다.

[별표 2] 저서 등의 평가기준 (제11조 제1항 관련)

1. 저서 등의 등급 구분

(개정 2013.7.4.)

구분		배점	비고
학술서		300점	각 해당 계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으로 우수한 전공서
전공서	전공서 A급	200점	각 해당 계열의 전문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서
	전공서 B급	100점	전공서 A급을 제외한 전공서 또는 학부 교재 전공서
번역서	외역서, 국역서 A급	150점	
	외역서, 국역서 B급	70점	
전공서, 번역서의 Chapter		30점	Chapter별 저자명 기재 필수, 동일 단행본에 대하여 최대 30점 까지만 인정하며, 번역서의 경우 최대 21점까지 부여 가능
기타 저서	검인정 교과서	50점	
	일반서(교사지도서, ICT 자료, 어학교재, 교양도서)	30점	
	연구보고서	20점	정부출연기관에서 발행하는 최종 연구보고서 (ISBN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저서 등의 평가시 세부사항

- 가. 학술서, 전공서, 번역서, 일반서는 해당 교원의 전공분야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7.4.)
- 나. 전공서A급이나 B급 도서 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도서는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대 5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평가 받은 저서가 수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수상작으로 선정된 평가시기에 최대 5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기평가지 가산점 부여된 경우 50점에서 기부여된 가산점을 제외하고 부여할 수 있다.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가산점을 공저자수로 나누어 부여한다. (개정 2013.7.4.)
- 다. 개정판(검인정교과서는 제외)은 개정 비율과 초판의 평가점수를 참작하여 평정하되, 그 평가점수는 초판평가 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때 개정 비율은 개정된 부분의 분량, 개정의 정도를 참작하여 산정한다.
- 라. 위 1.의 저서 등의 등급 구분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평, 논평, 편저 등은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적의 내용에 따라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마. 문예창작 집은 전공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용어사전은 전공서로 평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3.7.4.)
- 바. 전공서 B급에 해당되더라도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공서 A급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 기타 저서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7.4.)

[별표 3]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이전의 평가기준 (제11조 제2항 관련)

1.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이전의 등급 및 배점 (개정 2013.7.4.)

구분		배점(계열 공통)
특허등록	국제	120점
	국내	80점
실용신안등록		60점
기술이전		5~100점

2.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 기술이전 평가시 세부사항 (개정 2013.7.4.)

- 가. 등록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출원 또는 출원중인 실적에 대하여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나.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점수를 부여하고, 공동으로 발명한 실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발명자 총 수로 나눈다. 다만, 발명자 중 학생은 소속 학교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명자 총 수에서 제외하되 교원 1인의 기여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 다.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국제와 국내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등록한 경우에는 국제특허는 100점, 국내특허는 60점, 실용신안은 30점으로 한다.
- 라. 기술이전 점수는 여입금액 기준에 따라 점수부여하며, 점수배점 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7.4.)
- 마. 기술이전 점수는 연간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7.4.)

[별표 4] 음악부문 실적 평가기준 (제12조 제2항 관련)

1. 음악부문 실적의 등급 및 배점

(개정 2013.7.4.)

종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 점	비 고
독주회·독창회	독주회·독창회	60분 내외	100점	대학(원)장은 전공(또는 학과)교수회 및 대학(원)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주(공연) 장소의 등급을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의 구분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에 대하여 각각 A급은 100%, B급은 80%, C급은 60%의 점수를 부여한다.
실내악	실내악(2~10중주)	60분 내외	40~50점	
협 연	국내외 유수 교향악단	30분 내외	60점	
	국내외 유수 실내악단	20분 내외	50점	
	2~4인 연주	20분 내외	30점	
지 휘	국내외 유수 교향악단, 전문합창단, 전문실내악단	전체프로그램 랩	60점	
	아마추어합창단, 학생(대학) 교향악단·합창단	전체프로그램 랩	20~30점	
오페라 출연	국내외 유수 오페라	주연	100점	
		조연	40점	
	국내외 유수 소규모 오페라	주연	60점	
		조연	20점	
연 출	국내외 유수 오페라		100점	
	국내외 유수 소규모 오페라		60점	
작곡 발표회	개인 작곡발표회	60분 내외	100점	
	오페라, 무용음악	30분 내외	100점	
	교향곡 등 대규모 편성	15분 내외		
	실내악	10분 내외	70점 (한국음악 30점)	
	합창곡	5분 내외	20점	
	무반주 독주기악곡	5분 내외	30점 (한국음악 20점)	
	가곡	5분 내외	20점	
	편곡	대규모	10점	
		소규모	5점	
반 주	기악·성악	전체프로그램 랩	25점	
부분연주	전체 연주회의 한 프로그램 참여 (독창, 독주 등)	15분 내외	10~20점	
음 반			해당점수의 60%	위의 각 평가항목 해당 점수의 60%를 부여한다. 또한 위의 각 평가항목으로 평가받은 연주회의 실황 녹음은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음악부문 실적 평가시 세부사항

가. 해외에서 실시된 연주는 유수 공연장에서의 연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항목별 배점 및 연주장소의 등급 구분에도 불구하고 연주된 실적의 내용에 따라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다. 동일한 곡목으로 4년(한국음악과는 3년) 이내에 실시된 연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년(한국음악전공은 3년) 후 재연주일 경우에는 80%로 평가한다.

라. (삭제 2009.4.21)

마. 신작발표는 연주, 출판, 출판 중 1개 분야에 한하여 평가한다.

바. 공연예술대학원 소속 교원은 컴퓨터음악작곡, 레코딩, CD·DVD·뮤직비디오 제작, 영상음악(영화음악, 애니메이션, 광고음악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실적물은 학문적 비중 및 기여도에 따라 10~100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0.3.16)

[별표 5] 조형예술부문 실적 평가기준 (제12조 제2항 관련)

1. 조형예술부문 실적의 등급 및 배점

종별	평가항목	세부내용	등급별 배점			비고
			A급	B급	C급	
전시회	개인전	1. 국제적 또는 동등한 수준의 미술관 규모의 특별 기획 개인전	등급 구분 없이 150점			전시 장소의 등급과 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등급은 대학(원)장이 전공(또는 학과) 교수회 및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2. 전문화랑	120점	100점	80점	
	기획 초대전	1. 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기획 초대전	60점	40점	20점	
		2. 전문화랑 규모의 기획초대전	40점	30점	20점	
	일반 단체전		30점	20점	10점	
디자인 프로젝트	국제	1. 대형 프로젝트	등급 구분 없이 150점			디자인 프로젝트의 등급은 용역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대학(원)장이 전공(또는 학과) 교수회 및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2. 중형 프로젝트	120점	100점		
		3. 소형 프로젝트	60점	40점		
	국내	1. 대형 프로젝트	등급 구분 없이 120점			
		2. 중형 프로젝트	80점	60점		
		3. 소형 프로젝트	40점	20점		

2. 조형예술부문 실적 평가시 세부사항

- 가. ‘공인된 단체 및 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 언론기관, 공공문화재단, 문예진흥원, 미술협회 등에 등록된 단체 등을 말한다.
- 나. 평가항목별 배점 및 전시 장소의 등급 구분에도 불구하고 전시된 실적의 내용에 따라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 다. 2인전의 경우에는 개인전에 준하는 점수의 1/2로 하며, 3인 이상의 전시는 단체전으로 간주한다.
- 라. 학교에 여입되지 아니한 디자인 프로젝트 실적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마. 디자인 프로젝트의 경우 단독 연구라 하더라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른 인력(학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점수의 70%만 인정한다.
- 바. 평가 대상자 자신이 지정한 연 12건 이내의 연구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신설 2009.4.21)
- 사. 모든 작품은 신작에 한하여 점수 인정되며, 구작인 경우 기획초대전에 한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7.4.)

[별표 6] 무용부문 실적 평가기준 (제12조 제2항 관련)

1. 무용부문 실적의 등급 및 배점

(개정 2013.7.4.)

종별	평가항목	세부내용	등급별 배점			비고
			A급	B급	C급	
개인발표회		60분 이상	150점	120점	90점	개인이 기획, 감독, 안무를 모두 담당하여 발표된 공연
안무	개인안무	30분 이내	90점	70점	50점	안무자 개인이 무용작품 전체를 안무하는 것.
		60분 이내	120점	100점	80점	
	공동안무	30분 이내	90점	70점	50점	무용작품 하나를 여러 명이 안무하는 것(개인안무점수를 안무자 수로 나눔)
		60분 이내	120점	100점	80점	
	재구성 및 재안무	30분 이내	50점	40점	30점	초연 후 3년이 지난 작품으로 안무했던 작품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동일 작품은 연 1회에 한하여 평가함).
		60분 이내	80점	70점	60점	
	각종공연 및 야외공연안무	30분 이내	30점	20점	10점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에 필요한 무용 안무
		60분 이내	50점	40점	30점	
출연	독무		80점	70점	60점	
	3인 이상 군무		50점	40점	30점	
무용예배	안무		90점			본교 대강당 채플 공연(창작품에 한함)
	재안무 및 재구성		50점			

2. 무용부문 실적 평가시 세부사항

- 가. 공연장소의 등급은 대학(원)장이 전공(또는 학과) 교수회 및 실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나. 평가항목별 배점 및 공연 장소의 등급 구분에도 불구하고 공연된 실적의 내용에 따라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 다. 개인발표회는 연 1회 공연에 한한다.
- 라. 순회공연안무는 위에 제시한 종별 및 평가내용 공연장소 규모에 준하여 첫 1회 공연만 평가한다.
- 마. One stage 안무는 전체 연주 점수를 기준으로 분할한다.

[별표 7] 건축설계부문 실적 평가기준 (제12조 제4항 관련)

1. 건축설계부문 실적의 등급 및 배점

종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가. 설계경기 및 터키 (실현 프로젝트를 전제로 한 설계경기)	(1) 현상설계 및 터키 1위 당선		170점	(4)는 국제적인 창작활동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현상설계 3위 이내 입상		140점	
	(3) 현상설계 및 터키 입상		120점	
	(4) 현상설계 및 터키 출품안		70점	
나. 공모전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설계공모)	(1) 공모전 1위 당선		150점	1. (4)는 국제적인 창작활동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4) 내지 (6)에 의해 취득한 점수는 1년에 총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5) 내지 (6)은 지도학생이 응모전에 작품지도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 공모전 3위 이내 입상		120점	
	(3) 공모전 입상		80점	
	(4) 공모전 출품 안		60점	
	(5) 설계 지도학생작품 공모전 3위 이내 입상		30점	
	(6) 설계 지도학생작품 공모전 입상		20점	
다. 프로젝트	(1) 도시구상 및 마스터플랜 관련 프로젝트		100점	1. (2)의 시공된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계획프로젝트로서 실적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받은 점수를 감한다. 2. (4)는 배점 범위 안에서 10점 단위로 산정한다. 3. (4)는 실현된 가구·무대·전시 디자인, 환경설치물 및 이와 유사한 범주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2) 건축설계	계획 프로젝트	60점	
		시공된 프로젝트	120점	
	(3) 실현된 실내디자인 프로젝트		80점	
라. 건축 및 디자인 전문잡지 게재	(1) 해당전문지가 설계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논의하기 위하여 기획 형식 또는 이와 동등한 비중으로 2개 이상의 작품이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게재된 경우		종별 해당 점수의 1.5배	전문잡지에 게재된 실적의 내용이 이미 종별 ‘가’, ‘나’, ‘다’의 기준에 따라 실적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잡지 게재 점수에서 이미 받은 각 해당 점수를 감한다.
	(2) 해당전문지에 각종 도면등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게재된 작품		종별 해당 점수의 1.3배	
마. 전시	(1) 개인전		120점	
	(2) 그룹전 (2~10인)		80점	
	(3) 단체전 (11인 이상)		50점	
	(4) 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기획초대전 작품	A등급	70점	관련 학·협회 및 동등한 수준의 기관, 단체의 초대작가전
		B등급	50점	기타 관련 단체의 기획초대전

2. 건축설계부문 실적 평가시 세부사항

가. 국제적인 창작활동이란 종별 가, 나, 라 및 마의(4)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국내기준 점수에 100%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개정 2013.7.4.)

나. (삭제 2010.3.16)

다. 건축설계 공동 연구실적에 대한 기여율은 설계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구분	단독	2인 공동	3인 공동	4인 공동	5인 이상
기여율	100%	80%	70%	50%	30%

라. ‘건축 및 디자인 전문잡지’라 함은 국제급은 Columbia University의 Avery Index에 명시된 저널, 국내급은 건축문화, Plus, 와이드, 건축세계, MARU, Dlle, Interiors, Iw(interior world), Bob, The Plan, Public Art, Concept 를 말한다. (개정 2013.7.4.)

마. 기타 건축설계부문 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3.16)

[별표 8] 통역번역부문 실적 평가기준 (제12조 제5항 관련)

1. 통역실적 평가기준

(개정 2013.7.4.)

종별		평가항목	배점 (1회)
A급	규모	국제기구/단체 세계 대회 또는 1,000명 이상 참석 또는 30개국 이상 국가 대표 참석	5.3점
	중요도	국가정상, 5부요인, 부총리급, 장·차관급, 국회의원, 대학총장, 글로벌기업 CEO, 노벨수상자, UN 및 국제기구 대표 참석	
	형식 난이도	working language 5개 이상(relay통역) 또는 방송 통역, 화상회의 통역	
B급	규모	국제기구/단체 아시아 태평양 대회 또는 500명 이상 참석	4.0점
	중요도	UN 및 국제기구 지역대표, 국책연구기관장, 경제5단체장 참석	
	주제 난이도	의학, 금융, 법률, 국제정치, 통상, 과학, 기술, 환경, 에너지	
	형식 난이도	국제 소송/재판, 상사 중재 정부간 협상, 학술대회/심포지엄, 국제로드쇼(IPO), M&A 협상, 주주총회, working language 3개 이상(relay 통역)	
C급	규모	100명 이상 참석 또는 3개국 이상 대표 참석	2.7점
	중요도	기업 CEO, 국영기업 CEO, 전문가협회 회장, 민간연구소 소장	
	형식 난이도	경영회의, 기업실사, 언론 인터뷰 및 간담회	
D급	규모	30명 이상 참석	1.3점
	형식 난이도	교육, 워크숍, 1인 위스퍼링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회의(사내교육/회의, 무역상담, 홍보성 행사, 근접통역 등)	0.7점

①본교 통역번역연구소를 경유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신설 213.7.4.)

②회의의 규모, 중요도 또는 형식이나 주제 난이도 중의 하나의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3.7.4.)

2. 번역실적 평가기준

(개정 2013.7.4.)

구분		세부내용	배점
번역서	A급	수상작, 추천도서, 해외출판, 전문가대상 도서	150점
	B급	300쪽 이상의 일반도서	100점
	C급	300쪽 미만의 일반도서	70점
번역물	A급	학술논문, 평론, 문학텍스트, 영화/연극자막, 광고/홍보/마케팅 카피	0.8점
	B급	법령, 외교문서, 협상문서, 광고/홍보/마케팅 텍스트	0.6점
	C급	매뉴얼 등을 포함한 소개 및 설명의 글	0.4점

①번역물은 본교 통역번역연구소를 경유한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A4 용지 25행 1쪽을 배점기준으로 난이도 및 중요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3.7.4.)

②번역서 및 번역물을 감수한 경우에는 해당등급 및 해당분량 번역 평가점수의 20%의 점수를 부여하며, 번역서의 감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점수에서 20%를 감한다. (개정 2013.7.4.)

[별표 9] 승진·승급을 위한 연구실적 의무편수 등(제13조 관련)

1. 공통사항

- 가. 이 세척에서 'SCI급'이라 함은 별표 1에서의 국제 S급, 국제 특A급, 국제 A급, 국제 B급, 국제 C급, 국제 D급의 학술지 논문을 말한다. (개정 2013.7.4.)
- 나. 이 세척에서 '국제급'이라 함은 SCI급과 SCOPUS, 기타 국제 논문을 말한다. (개정 2013.7.4.)
- 다. 이 세척에서 '재단등재급 이상'이라 함은 국제급과 국내 A급 논문을 말한다. (개정 2014.1.29.)
- 라. 이 세척에서 '재단등재후보급 이상'이라 함은 재단등재급이상과 국내 B급 논문을 말한다. (개정 2014.1.29.)
- 마.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수 직급에서 책임시간과 연계하여 조정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는 아래와 같다(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개정 2014.1.29.)
- (개정 2013.7.4.)

2. 승진·승급을 위한 연구실적 의무편수 등

가. 인문사회계열

(1) 공통사항

- (가) 인문사회계열 교원이 승진·승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연구실적 의무편수 중 1편 이상은 반드시 국제급 논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4.)
- (나) 위의 사항에 대해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대학원(디지털미디어학부 인문사회계열, 뇌·인지과학과 인문사회계열, 음악치료학과), 국제대학원(한국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제외), 경영대학, 건강과학대학(체육과학부, 보건관리학과), 스크랜튼대학(스크랜튼학부 인문사회계열), 교양교육원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재단등재후보급 이상	6 (4)	5 (4)	6 (4)	6 (4)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4 (3)	4 (3)
				3 (2)

①괄호 안은 단독 연구실적 또는 교신저자 연구실적 편수

- ②SCI급(국제A급 이상 제외) 1편, 학술서나 전공서A급 1편, 외역서A급 1편, 국역서A급 1편은 각각 재단등재후보급 이상 논문 2편으로 간주하고, 국제A급 이상 논문 1편은 재단등재후보급 이상 논문 3편으로 간주함. (개정 2014.1.29.)

(3) 국제대학원(국제학), 스크랜튼대학(국제학부)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국제급	3	2	3	3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2	2
				1

①SCI급 논문 1편은 국제급 2편으로 인정함.

- ②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교원은 전공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를 적용함.

나. 자연계열 (개정 2013.7.4.)

- (1) 대학원(에코과학, 디지털미디어학부 공학계열), 자연과학대학(수학, 통계학), 공과대학(건축학부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교원, 환경공학전공, 대기과학공학과 제외), 조형예술대학(의류학과 자연계열), 사범대학(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건강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스크랜튼대학(스크랜튼학부 자연계열)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교신저자 SCI급	3	3	4	4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3	3
				2

- ①대학원(에코과학), 자연과학대학(수학, 통계학) 소속 교원은 승진 소요 연구실적점수의 50% 이상을 SCI급 및 국내 A급 논문에 의한 점수로 충족해야 함.
- ②사범대학(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소속 교원은 교신저자 연구실적 외에 공동연구실적을 포함한다.
- ③조형예술대학(의류학과 자연계열), 건강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의 급식 경영분야 소속교원은 SCI급 논문 외에 기타 국제학술지 논문을 포함한다. (개정 2009.4.21)
- ④(삭제 2013.7.4.)

- (2) 대학원(화학·나노과학과), 자연과학대학(물리학, 화학·나노과학)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교신저자 SCI급	6 (2)	5 (2)	6 (2)	6 (2)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4 (2)	4 (2)
				3 (1)

- ①괄호 안은 국제A급 이상 논문임. (개정 2014.1.29.)
- ②승진 소요 연구실적점수의 50% 이상을 SCI급 논문에 의한 점수로 충족해야 함.

- (3) 대학원(생명·약학부, 뇌·인지과학과), 자연과학대학(생명과학), 약학대학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교신저자 SCI급(국제A급 이상에 한함)	2	2	2	2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2	2
				1

- * 대학원(생명·약학부), 자연과학대학(생명과학), 약학대학 소속 교원이 승진·승급하기 위하여는 이 외에 별도로 정하는 SCI급 국제논문의 Impact Factor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4) 의학전문대학원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SCI급	기초의학	4 (2)	5 (3)	5 (3)	4 (2)
	임상	2 (1)	3 (1)	3 (1)	2 (1)

- * 괄호 안은 교신저자 연구실적 편수

(5)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계 획분야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재단등재급 이상	6 (4)	5 (4)	6 (4)	6 (4)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4 (3)	4 (3)
				3 (2)

① 괄호 안은 교신저자 연구실적 편수

②(삭제 2010.3.16)

(6)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설계분야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건축창작 활동 및 재단등재급 이상 논문	4 (3)	4 (3)	4 (3)	4 (3)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3 (2)	3 (2)
				2 (1)

① 괄호 안은 책임설계자 및 교신저자의 연구실적 편수

② 위 기준의 '건축창작 활동'은 [별표 7]의 '가'의 (1)~(3), '나'의 (1)~(3) 및 '다'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③ 위 기준의 '논문'은 의무편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4.)

(7) 공과대학 환경공학전공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교신저자 SCI급	5	5	6	6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4	4
				3

(8) 공과대학 대기과학공학과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교신저자 SCI급	3	3 (1)	4 (1)	4 (1)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3 (1)	3 (1)
				2

*괄호 안은 국제A급 이상 논문임.

(9) 건강과학대학 간호학부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SCI급	4 (2)	4 (3)	5 (4)	5 (4)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3	3
				2

① 괄호 안은 교신저자 연구실적 편수

② 승진·승급시 '교수현장실습'에 대한 의무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다. 예능계열

(1)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 예능계열), 공연예술대학원, 음악대학 (무용부문 제외), 조형예술대학 (의류학과 자연계열 제외), 교목실,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예능계열) (개정 2013.7.4.)

* (가) 또는 (나)에서 정하는 의무편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6)

(가) 개인발표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개인 공연/전시	3	2	2	2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2	2
				1

(나) 학술지 논문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재단등재후보급 이상	6 (4)	5 (4)	6 (4)	6 (4)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4 (3)	4 (3)
				3 (2)

① 괄호안은 교신저자 연구실적 편수임. 단, 의류학과는 승진/승급시 국제급 1편 또는 국제적 창작활동 1건 이상 반드시 포함. (개정 2010.3.16)

② SCI급(국제A급 이상 제외) 1편, 학술서나 전공서A급 1편, 외역서A급 1편, 국역서A급 1편, 개인발표 1건(A급 장소), 학교여업 디자인 프로젝트 1건(개인지분 3천만원 이상)은 재단등재/등재후보 2편으로 간주함. SCI급(국제A급 이상) 1편은 재단등재/등재후보 3편으로 간주함. (개정 2014.1.29.)

(2) 무용부문, 스크랜튼대학(스크랜튼학부 예능계열) (개정 2013.7.4.)

* (가) 또는 (나)에서 정하는 의무편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개인발표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개인발표회	6 (3)	5 (2)	6 (2)	6 (2)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4 (2)	4 (2)
				3 (1)

* 괄호 안은 A급, B급 공연장소에서의 개인발표회임.

(나) 학술지논문 (개정 2014.1.29.)

구분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C	교수C→교수B	교수B→교수A
학진등재후보급 이상	6 (4)	5 (4)	6 (4)	6 (4)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0항 관련)			4 (3)	4 (3)
				3 (2)

[별표 10] 교육실적 평가기준표 (제16조 관련)

(개정 2013.7.4.)

종별	배점	세부내용	비 고
초과강의	학점당 5점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담당교과목에 대해 학점당 5점 부여	책임시간 기준을 달리하는 대학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영어강의 (원어강의 포함)	학점당 5점 (학부 기준)	- 학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한 경우(원어강의를 포함한다) 학점당 5점 부여(다만, 2007년 3월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의 영어강의 의무시수에 포함된 과목은 대상에서 제외함)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점수의 50%만 부여한다. - 영어강의(원어강의 포함) 인정 제외 전공(또는 학과) 소속 교원 - 대학원 소속 교원의 대학원 영어강의	외국인교원의 모국어로 하는 원어강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교육방법개발 및 강의공개	과목당 10점	새로운 교육방법의 시도 및 개선 새로운 교양과목의 개발과 강의 담당	
	과목당 10~20점	- 본교 정규 교과목에 한하며, 전체 강의 중 10주차 이상의 동영상을 1년 이상 공개한 경우에 대하여 점수 부여 - 교내 공개의 경우 10점, 외부 공개의 경우 20점 부여	- 교수학습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강의공개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 동일 교과목에 대하여는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50%이상 업데이트하여 재등록한 후 1년 이상 다시 공개한 경우 최초 부여 점수의 1/2이내에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전당 2점	외부에 공개한 특강(교과목의 일부가 아닌 별도 특강)에 대하여 점수 부여	
강의우수 교원	30점	강의우수 교원 선정시 해당 연도에 점수 부여	
강의계획	학기당 5점	당해 학기 담당하는 모든 교과목(팀티칭과목 포함)의 강의계획안을 입력마감일 전까지 인터넷에 입력한 경우 점수 부여	연구년 및 기타의 사유로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신교육방법 개발 및 강의공개 실적의 총 점수는 연간 최대 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7.4.)

②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의 교육실적 평가기준 및 배점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4.)

[별표 11] 봉사실적 평가기준표 (제17조 관련)

(개정 2013.7.4.)

종별	평가항목		배점	비고
보직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연간 90점	학기 단위로 점수 부여
	교학부장 및 전임학부장급		연간 65점	
	전공주임교수 (학과장)급		연간 40점	
교외연구비	계열별 교외연구비 여입금액 기준에 따라 5점 단위로 부여		연간 5~30점	
본부위원회 활동	정규위원회		연간 10점	1. 학기 단위로 점수 부여(1회 이상 활동한 위원회에 대해서만 평가대상으로 한다) 2.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등 당연직 위원의 활동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위원회		연간 5~10점	
석·박사 논문지도	석사	일반·전문대학원	1인당 4점	1. 정해진 기간 동안 당해 교원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논문을 지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대학원	1인당 2점	
	박사		1인당 10점	
외부 학술봉사 및 수상			건당 10점	1. 국제학술지 및 학진등재(후보)지의 학회장, 편집위원장 2. 학술 관련 수상(국제, 정부, 학진등재(후보)학회 등 권위있는 학술단체) 3. 한국연구재단 대표성과 및 우수사업 선정 등 4. 외부단체 우수강의 선정 등 5.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제협력 봉사	해외대학/연구소 등과의 학술협력 주도		건당 5~10점	1. 국제교류처장이 인정하는 활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2.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등 당연직 위원의 활동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생인솔 해외 프로그램운영		건당 5~10점	
	교환/방문학생 선발위원 활동(출제, 면접, 심사 등)		건당 5점	
	해외유학생, 교환 방문학생(학부) 지도		건당 5점	
	기타 국제협력 활동		건당 5점	
홈페이지 구축·관리	한글, 영문 홈페이지 동시 구축 권장		연간 10점	프로필, 당해연도 연구실적 및 강의목록(사이버 캠퍼스 사용으로 대체 가능) 게시
입시 관련 봉사	기획관리위원 및 예체능 관리위원		연간 15점	1. 수시, 정시, 편입학 등 정규 학부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한다. 2.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등 당연직 위원의 활동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출제위원(논술, 면접, 실기) 및 논술채점위원		건당 10점	
	실기 및 서류 전형 채점		건당 5점	
	감독 및 면접 위원		건당 3점	
대학(원) 활동	전공(학과)내 행사 참여 및 기여도 등		연간 5점 이내	1.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 활동'에 대한 평가대상 및 배점을 소속 교원에게 사전에 공개한다. 2. 연간 최대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취업 지도		연간 10점 이내	
	대학(원)내 행사 및 위원회 활동, 기타 대학(원) 기여도 등		연간 15점 이내	
본부 관련 학생지도	본부 동아리 지도		연간 5~10점	1.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학생지도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교무위원 및 부처장급 등 당연직 위원의 활동은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간 최대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학생 관련 프로그램 지도		연간 5~10점	
기타	국책사업 사업단장	소형과제	학기당 3점	특수대학원 전공주임교수 등 유사 보직 또는 보직점수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부)기관장 등의 활동 1. 겸임교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교내 겸임 교원의 학사활동 참여 및 학생지도 활동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연간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대형과제	학기당 5점	
	본부 보직발령이 아닌 보직		학기당 5점	
	겸임교원의 학생지도 활동		연간 5~10점	
	학교에 대한 특별한 기여		건당 10~20점	

*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의 봉사실적 평가기준 및 배점에 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